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 명	향후 일정안내
2교시	회계학2부	90분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답안양식>에 따라 각 [물음]에 답하시오.(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정하며,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자료이다.

1. 업무용승용차 A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2016.1.1 ₩150,000,000(부가가치세 ₩15,000,000 별도)에 취득하였다.

2.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A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감가상각비	₩30,000,000
유지관련 비용*1	7,000,000

*1. 유지관련 비용에는 부가가치세 ₩6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3. 업무용승용차 A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다.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 : 0.2)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이강남 씨는 2007.1.1 (주)한국의 임원으로 입사하여 2016.12.31 퇴사하며 퇴직금 ₩500,000,000을 수령하였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이강남씨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20,000,000 이지만, 재직기간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사회 별도 결의로 퇴직위로금 ₩80,000,000을 추가하여 총 ₩500,000,000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3. 과거 3년간 (주)한국이 이강남씨에게 지급하거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급여 등	인정상여	비과세소득	합 계
2014.1.1~2014.12.31	₩80,000,000	-	₩5,000,000	₩85,000,000
2015.1.1~2015.12.31	100,000,000	45,000,000	5,000,000	150,000,000
2016.1.1~2016.12.31	120,000,000	30,000,000	5,000,000	155,000,000

4.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0,000,000 이다.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접대비에 관한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100,000,000 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접대비는 없음)

(1) 일반접대비

구 분	건당 1만원 이하	건당 1만원 초과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1	₩3,000,000	₩39,000,000	₩42,000,000
영수증 수취*2	5,000,000	15,000,000	20,000,000
증명서류 미수취*3	-	8,000,000	8,000,000
합 계	8,000,000	62,000,000	70,000,000

*1. 건당 1만원 초과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한 금액에는 (주)한국의 임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10,0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2. 영수증 수취한 금액은 모두 해외 출장 시 거래처 접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3. 증명서류 미수취한 접대비 ₩8,000,000은 (주)한국의 제품(원가 ₩7,000,000, 시가 ₩10,000,000)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이다.

(차변)	접대비	8,000,000	(대변)	제품	7,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 경조사비

회사는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경조사비 ₩30,000,000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였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사의 매출액은 ₩30,000,000,000 이고 당해 금액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10,000,0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보험차익에 관한 자료이다.

1. 2016.1.1 건물 A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화재발생 당시 건물 A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40,000,000으로 세무상 가액과 동일하였다.

2. 2016.4.1 동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금 ₩80,000,000을 수령하고 보험차익 ₩40,000,000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2016.7.30 건물 A와 동일한 종류의 건물 B를 ₩100,000,000에 취득하였다.

4. 건물 B에 대한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며, (주)한국은 제16기에 건물 B의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계상하였다.

<자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1. 당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상계액*1	₩20,000,000	전기이월	₩30,000,000
기말잔액	60,000,000	설정액	50,000,000

*1. 당기 상계액 ₩20,000,000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받을어음을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2.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상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금 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5,000,000
외상매출금(대손부인액)*2	10,000,000
대여금(대손부인액)	100,000,000

*2. 당기 중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3. 전기말 현재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금액은 ₩1,500,000,000 이다.

4.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금 액	비 고
외상매출금	₩1,500,000,000	부가가치세매출세액 ₩500,000,000 포함
미수금	400,000,000	2016.2.10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300,000,000의 토지를 ₩400,000,000에 양도하며 발생한 미수금임
대여금	600,000,000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금 ₩100,000,000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대여금 ₩100,000,000 포함함

<자료 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16기(2016.1.1~2016.12.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제16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
익금산입	70,000,000
손금산입	2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150,000,000
기부금한도초과액*1	20,000,0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2	4,5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65,500,000

*1. 당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다.

*2. 제15기에 발생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20,000,000 중 당기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 금액이다.

2. 당기 중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없다.

3. (주)한국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80,000,000 이다. (제14기 발생금액임)

4. (주)한국은 상기 세무조정 이외에 익금산입 항목 ₩20,000,000 이 추가로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답안양식> 아래 물음에서 "세무조정을 하시오"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답하시오.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 ××× (기타사외유출)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물음 1] <자료 1>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물음 1-1]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1-2]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한다.)

[물음 2] <자료 2>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5점)

[물음 2-1] (주)한국이 제16기 사업연도에 이강남 씨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

[물음 2-2] 이강남씨의 퇴직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음 3] <자료 3>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4] <자료 4>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5] <자료 5>에 따라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5점)

[물음 6] <자료 6>에 따라 누락된 익금산입 항목 ₩20,000,000을 반영할 경우 (주)한국의 제16기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5점)

【문제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국세의 제11기 사업연도(2016.1.1~2016.12.31) 법인세액 산출을 위한 자료이다. (주)국세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은 A국과 B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국세와 해외지점 및 해외자회사의 결산일은 동일하며, 자료 이외의 공제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의 내역

구분	국내	A국	B국	합계
소득금액	₩400,000,000	₩200,000,000	₩100,000,000	₩700,000,000
직접외국납부세액	-	25,000,000	15,000,000	40,000,000
의제외국납부세액	-	-	5,000,000	5,000,000

2. A국과 B국의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되었다.

3. A국 소득금액에는 (주)국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3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 ₩30,000,000(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세액 ₩4,000,000은 A국 직접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외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00,000,000 이며, 법인세액은 ₩50,000,000 이다.

4. B국의 의제외국납부세액은 B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B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였다.

5.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5,000,000 이 있으며, 이는 A국에서 발생된 것이다.

6.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이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세무의 제11기 사업연도(2016.1.1~2016.12.31) 자료이다. (단, (주)세무는 지주회사가 아니다.)

1.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의 내역

구 분	연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회사채이자*1	8%	₩16,000,000	₩73,200,000,000
차입금이자	6%	18,000,000	109,800,000,000
합계		34,000,000	183,000,000,000

*1. 회사채이자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2,000,000 이 포함되어 있다.

2. 2014.6.30에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인 토지의 당기말 장부가액은 ₩40,000,000 이며, 이 중 ₩10,000,000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취득액이다.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이후 변동은 없다.

3. 2015.5.1에 비상장법인인 (주)한국 발행주식 중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30,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이후 장부가액 변동 없이 당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주)한국으로부터 2016.3.15(배당기준일 2015.12.31, 잉여금처분결의일 2016.2.20)에 액면발행된 주식배당 ₩2,000,000을 받았으나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동 주식배당은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4.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600,000,000 이다.

5.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지분율 50% 이하)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30%이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국세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주)국세의 법인세 산출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8점)

[물음 2] <자료 1>을 이용하여 (주)국세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으로서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적용할 경우 (주)국세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4점)

[물음 3] <자료 2>를 이용하여 (주)세무의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에 대한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처분을 하시오. (8점)

<답안양식>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문제 3】 다음은 거주자 김국세 씨(남성, 67세)의 2016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들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30점)

1. 금융소득 관련자료
 ① A법인(비상장내국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에 따라 무상주 3,000주를 교부받음. (1주당 시가는 ₩6,000 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임)
 ② 직장공제회(2001년도에 가입함)를 탈퇴하고 지급받은 초과반환금 : ₩5,000,000
 ③ 국외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 ₩11,000,000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④ B법인(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 ₩9,000,000
 ⑤ 비실명배당소득 : ₩8,000,000
 ⑥ 저축성보험(2010년 7월에 계약함)의 만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20,000,000 (불입한 보험료 총액은 ₩16,000,000임)

2. 김국세 씨는 C법인(중소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6년 6월말 퇴사하였다. 2016년도에 김국세 씨가 C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 및 상여금 : ₩30,000,000(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② 연구보조비 : ₩2,400,000(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400,000씩)

③ 2016년 3월에 사내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500,000

④ C법인이 김국세 씨를 수익자로 하여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상해보험료 : ₩1,000,000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 ₩1,500,000

⑤ 2010년도에 C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16년 8월에 행사함에 따라, 1주당 시가가 ₩9,000 인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액인 1주당 ₩5,000 에 2,000주를 취득하였다.

3. 김국세 씨가 C법인을 퇴사한 이후 2016년도말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12,000,000 이다. 당해 국민연금 총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800,000,000 이고, 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600,000,000 이다. 그리고 당해 국민연금 총납입기간 동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70,000,000 이고, 2002.1.1 이후의 납입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49,000,000 이며, 2002.1.1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없다.

4. 김국세 씨가 2016년도에 사적연금계좌(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 하는 종신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인출한 금액은 ₩11,000,000 이다.(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갖추지 아니함.) 당해 ₩11,000,000은 사적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것이다. 그리고 당해 ₩11,000,000 중에서 ₩6,000,000은 연금수령분이고 나머지 ₩5,000,000은 연금외수령분이다.

5. 상기 이외에 김국세 씨의 2016년도 귀속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 : ₩10,000,000(이에 대하여 증빙이 갖추어진 필요경비는 ₩8,500,000임)

②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 ₩7,000,000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 ₩18,000,000

④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 ₩600,000

⑤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액 : ₩1,000,000

6.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7. 연금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8.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1,200만원)×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4,600만원)×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과세표준-1억5천만원)×38%

9. 기타 참고사항

① 김국세 씨는 자신이 부담할 소득세 총액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김국세 씨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들과 김국세 씨는 세법상 규정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③ 김국세 씨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용한 종합소득공제는 ₩4,000,000 인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종합과세 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구분	해답
1. 종합과세 하는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2. 종합과세 하는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물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3점)

[물음 3]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구분	해답
1.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2.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	

[물음 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구분	해답
1.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소득세액	

[물음 5] 위의 [물음 1]에서의 정답이 다음과 같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및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3,000,000 이라고 가정하자.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16,000,000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25,000,000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2,300,000

이럴 경우 김국세 씨의 최종적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이 된다. 여기서 큰 금액을 산출세액 A라고 하고 작은 금액을 산출세액 B라고 칭할 때, 산출세액 A와 산출세액 B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구분	해답
1. 산출세액 A	
2. 산출세액 B	

청년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문제 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아래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가정한다. (20점)

<자료 1>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이하 "회사"라 함)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1부터 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아니다.

1. 회사는 2016.4.1에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을 매입하였다.

매입처	품목	매입수량	매입단가	총매입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갑	휴대폰 A	100개	₩100,000	₩10,000,000	2016.4.1	2016.5.10
을	원재료 A	200개	50,000	10,000,000	2016.4.1	2016.7.12
병	원재료 B	50개	10,000	500,000	2016.4.1	2016.7.28

2. 회사는 2016.6.1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계약서상 총매입가액은 ₩300,000,000이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 2016.6.1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50,000,000, 건물 ₩10,000,000이고, 2015.11.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70,000,000, 건물 ₩30,000,000 이다.

3. 2016.6.1 관계회사는 공동경비 ₩100,000,000을 지출하고, 총 지출액 중 ₩50,000,000을 회사에 청구하였다. (단, 회사와 관계회사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회사가 40%, 관계회사가 60%이다.)

4. 회사는 2016.4.1에 매입한 휴대폰 A 100개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처분하였다. (단, 휴대폰 A의 시가(또는 판매가)는 1개당 ₩150,000이다.)
 - 2016.5.1 국외 잠정고객에게 견본품으로 10개를 무상 반출하였다.
 - 2016.5.30 국내 거래처에 50개를 판매하였다.
 - 2016.6.15 국내 고객에게 40개를 배달하는 중 교통사고로 전량 파손되었다. (단, 파손 변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40개의 시가 상당금액을 보상받았다.)

5. 회사는 2015.12.1에 구매한 휴대폰 B 100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단, 휴대폰 B의 시가(또는 판매가)는 1개당 ₩100,000 이다.)
 - 2016.4.30 회사의 연구 개발활동 목적으로 연구소로 5개를 반출하였다.

청년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2016.5.1 회사 창립기념일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종업원에게 경품으로 3개를 제공하였다.
- 2016.5.14 본사 보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회사 소유 창고로 50개를 반출하였다.
- 2016.6.2 회사 직매장에 광고 선전을 위한 진열품 목적으로 2개를 반출하였다.

6. 회사가 2015년에 제조한 휴대폰 부품 10,000개(1개당 제조원가 ₩500)를 검수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수출하였다.
 - 수출면허일: 2016.4.29, 수출선적일: 2016.5.1, 수입통관일: 2016.6.15, 수입자 인도일: 2016.7.14, 수입자 검수일: 2016.7.15
 - 총공급가액은 $10,000이고, 2016.4.30에 $4,000을 지급받고 ₩3,900,000으로 환가하고, 2016.7.15에 나머지 $6,000을 지급받고 원화로 환가함.
 - 각 시점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6.4.29	2016.4.30	2016.5.1	2016.6.15	2016.7.14	2016.7.15
기준환율	₩1,010	1,000	1,200	1,300	1,310	1,290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000	975	1,100	1,150	1,230	1,120

7. 회사가 2015년 제조한 휴대폰 부품 60,000개(1개당 제조원가 ₩500)를 국내 거래처에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매출처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거래금액	인도일	검수일	내국신용장개설일
A	₩30,000,000	2016.6.1	2016.6.30	2016.6.15
B	20,000,000	2016.5.1	2016.7.15	2016.5.10
C	10,000,000	2016.6.15	2016.6.30	2016.7.24

8. 회사가 2015.3.2에 ₩30,000,000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2016.6.1에 (주)국세에 매각하였다. (단, 회사는 2015.3.2에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매입하고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고, 내용연수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16.6.1 매각가액은 ₩15,000,000이다.)

9. 회사는 2016.6.1 매입한 토지를 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주)조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2016.6.1부터 6.30까지 담보제공의 대가로 ₩1,000,000을 수령하였다. (단, 동일한 담보제공에 따른 대가의 시가는 ₩2,000,000 이다.)

청년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10. 회사의 대손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공급시점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대손사유 확정시기
가	2010.6.28	₩121,000,000	2016.6.1
나	2010.12.3	11,000,000	2016.1.25
다	2011.1.4	25,300,000	2016.7.23
라	2013.4.1	55,000,000	2016.7.25

<자료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이하 "회사"라 함)이 2016.1.18 현재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아니다.

구분	장부가액	비고
유가증권	₩200,000,000	*1
원재료	30,000,000	*2
토지	500,000,000	*3
건물	150,000,000	*3
기계장치	80,000,000	*4
차량운반구	10,000,000	*5
비품	50,000,000	*6

*1. 유가증권은 단기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2016.1.18 현재 유가증권의 시가는 ₩300,000,000 이다.

*2. 원재료는 전액 과세사업용이다. 2016.1.18 현재 원재료의 시가는 ₩40,000,000 이다.

*3. 토지 및 건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비고
토지 A	2010.1.1	₩200,000,000	과세사업용
건물 A	2010.1.1	100,000,000	과세사업용
토지 B	2012.3.5	300,000,000	과세·면세사업 겸용
건물 B	2012.3.5	100,000,000	과세·면세사업 겸용

회사는 토지 B와 건물 B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6.1.1에 (주)세무와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2016.1.1 계약금 ₩100,000,000(토지분 ₩80,000,000, 건물분 ₩20,000,000) 수령
- 2016.2.15 잔금 ₩400,000,000(토지분 ₩320,000,000, 건물분 ₩80,000,000)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4. 기계장치는 과세·면세사업 겸용자산이고, 2015.1.3에 ₩160,000,000에 취득하였다.

*5.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과세·면세사업 겸용자산이고, 2015.1.15에 ₩20,000,000에 취득하였다.

*6. 과세·면세사업 겸용자산인 비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득가액	취득일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0,000,000	2014.6.2
그림(1998년 창작품)	40,000,000	2015.7.3

*7. 회사의 2015년 2기 과세공급가액은 ₩100,000,000, 면세공급가액은 ₩400,000,000 이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1)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10점)

(양식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임(이하 동일)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구분번호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정신고누락분		(7)			
	대손세액가감		(8)			
	합 계		(9)	기입불필요	㉮	기입불필요

<답안양식>

구분번호	금 액	세 액
(1)	ooooo	×××
·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물음 2] <자료 1>을 이용하여 매입세액 관련 자료의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2)를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4점)

(양식 2)

	구 분		구분번호	금 액	세율	세 액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고정자산 매입	(11)			
	예정신고 누락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중 략)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기입불필요

<답안양식>

구분번호	금 액	세 액
(10)	ooooo	×××
·		

[물음 3] <자료 1>을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신고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양식 3)을 보고 답안양식에 해당사항만 기입하시오. (단, 답안에 신고내용 구분번호 ()를 반드시 기입하시오.) (2점)

(양식 3)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구분번호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9)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0)			
	대손처분받은 세액	(51)			
	합 계	(52)	기입불필요		기입불필요

<답안양식>

구분번호	금 액	세 액
(49)	ooooo	×××
·		

[물음 4] <자료 2>를 이용하여 2016.1.18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시오. (4점)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